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4. 12. 19.(금)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4년 12월 1일

다. 회부일자 : 2014년 12월 2일

라. 상정일자 : 2014년 12월 18일

-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 · 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최정욱)

1. 제안사유

- 민선6기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도정 비전 실현을 위한 기구 개편에 따라
- 정원조례상 총 정원의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안업무와 신규 행정 수요 대응을 위한 인력 및 전문경력관 직위 지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

- 유사기능 통·폐합에 의한 인력 감축과 농산물 보급종자 업무의 국가 환원에 따른 인력 조정 및 청원·청주통합추진단 폐지 등 감축 요인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변동 없음 3,206명 (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1,542명 → 1,541명 (△1명)
 -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2명 → 43명(+1명)
-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안 별표 2)
 - 일반직공무원 비율 조정
 - 8·9급 10% 이상 → 9.5% 이상(△0.5%)
 - 전문경력관 1% 이내 → 1.5% 이내(+0.5%)
- 직급·직종별 정원조정 내역 (안 별표 3)
 - 일반직: △3명 (3급 △1명, 5급이하 △12명, 전문경력관 +10명)
 - 연구직: +1명 (연구사 +1명)
 - 지도직: +1명 (지도사 +1명)
 - 교육직: +1명 (조교 +1명)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한철우)

- 금번 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도정 비전 실현을 위한 기구 개편에 따라 정원조례상 총 정원의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규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인력 및 전문경력관 직위 지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유사기능 통·폐합에 따른 인력 감축과

농수산물 보급종자 업무의 국가 환원에 따른 인력조정 및 청원·청주통합추진단 폐지 등 감축요인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정원의 변동없이 집행기관의 정원을 1,541명으로 1명 감축하고,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을 43명으로 1명 증원하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의 일반직공무원 비율에서 8·9급 10% 이상을 9.5% 이상으로 0.5% 감원하며, 전문경력관 1% 이내를 1.5% 이내로 0.5% 증원하고,
- 직급·직종별 정원조정에 있어서 일반직 3명을 감축하고, 연구직, 지도직, 교육직을 각 1명씩 증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7

제출연월일 : 2014년 12월 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민선6기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도정 비전 실현을 위한 기구 개편에 따라
- 정원조례상 총 정원의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안업무와 신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인력 및 전문경력관 직위 지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
- 유사기능 통·폐합에 의한 인력 감축과 농산물 보급종자 업무의 국가 환원에 따른 인력 조정 및 청원·청주통합추진단 폐지 등 감축 요인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변동 없음 3,206명 (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1,542명 → 1,541명 (△1명)
 -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2명 → 43명(+1명)
-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안 별표 2)
 - 일반직공무원 비율 조정
 - 8·9급 10% 이상 → 9.5% 이상(△0.5%)
 - 전문경력관 1% 이내 → 1.5% 이내(+0.5%)
- 직급·직종별 정원조정 내역 (안 별표 3)
 - 일반직: △3명 (3급 △1명, 5급이하 △12명, 전문경력관 +10명)
 - 연구직: +1명 (연구사 +1명)
 - 지도직: +1명 (지도사 +1명)
 - 교육직: +1명 (조교 +1명)

3. 의안전문 : 불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 임

5. 관계법령 발췌 : 불 임

6. 비용추계서 : 불 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1,542명”를 “1,54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42명”을 “43명”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 율	6% 이내	18% 이내	32% 이내	33% 이내	9.5% 이상	1.5% 이내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19% 이내	81% 이상	26% 이내	74% 이상

3. 소방직공무원

구 분	소방정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 율	1% 이내	3% 이내	10% 이내	9% 이내	15% 이내	31% 이내	31% 이상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10% 이내	50% 이내	10% 이내	10% 이내	18% 이내	2% 이상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총 계	3,206	-				
정무직 계	1	1				
도지사	1	1				
일반직 계	1,423	-				
1~2급	1					1
2~3급	1		1			
3급	10	8		1		1
3~4급	2	2				
4급	67	42	7	5	7	6
5급이하 소계	1,323	-				
전문경력관 소계	19	-				
별정직 계	12	-				
1급 상당	1	1				
5급상당 이하 소계	11	-				
연구직 계	150	-				
연구관	27	1		24	2	
연구사	123	-				
지도직 계	25	-				
지도관	6			6		
지도사	19	-				
소방직 계	1,552	-				
소방정	14	3		11		
소방령이하	1,538	-				
교육공무원 계	43	-				
총장	1			1		
교수·부교수· 조교수·전임강사	30			30		
조교	12	-				

※ 복수별정은 별정에 포함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206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542명</u></p> <p>2. (생략)</p> <p>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u>42명</u></p> <p>4. (생략)</p> <p>[별표 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p> <p>1. 일반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구분</td> <td>4급 이상</td> <td>5급</td> <td>6급</td> <td>7급</td> <td>8급·9급</td> <td>전문경력관</td> </tr> <tr> <td>비율</td> <td>6% 이내</td> <td>18% 이내</td> <td>32% 이내</td> <td>33% 이내</td> <td>10% 이상</td> <td>1% 이내</td> </tr> </table> <p>2. ~ 4. (생략)</p> <p>[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직급별 \ 기관별</th> <th>총계</th> <th>본청</th> <th>의회</th> <th>직속기관</th> <th>사업소</th> <th>출장소</th> </tr> <tr> <td>총계</td> <td>3,206</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계</td> <td>1,426</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2급</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1</td> </tr> <tr> <td>2~3급</td> <td>1</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r> <tr> <td>3급</td> <td><u>11</u></td> <td><u>9</u></td> <td></td> <td>1</td> <td></td> <td>1</td> </tr> <tr> <td>3~4급</td> <td>2</td> <td>2</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67</td> <td>42</td> <td>7</td> <td>5</td> <td>7</td> <td>6</td> </tr> <tr> <td>5급이하 소계</td> <td>1,335</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전문경력관 소계</td> <td><u>9</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구직계</td> <td>149</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구관</td> <td>27</td> <td>1</td> <td></td> <td>24</td> <td>2</td> <td></td> </tr> <tr> <td>연구사</td> <td>12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지도직계</td> <td>24</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지도관</td> <td>6</td> <td></td> <td></td> <td>6</td> <td></td> <td></td> </tr> <tr> <td>지도사</td> <td>18</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교육공무원계</td> <td>4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총장</td> <td>1</td> <td></td> <td></td> <td>1</td> <td></td> <td></td> </tr> <tr> <td>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td> <td>30</td> <td></td> <td></td> <td>30</td> <td></td> <td></td> </tr> <tr> <td>조교</td> <td>1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율	6% 이내	18% 이내	32% 이내	33% 이내	10% 이상	1% 이내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총계	3,206						일반직계	1,426						1~2급	1					1	2~3급	1		1				3급	<u>11</u>	<u>9</u>		1		1	3~4급	2	2					4급	67	42	7	5	7	6	5급이하 소계	1,335						전문경력관 소계	<u>9</u>						연구직계	149						연구관	27	1		24	2		연구사	122						지도직계	24						지도관	6			6			지도사	18						교육공무원계	42						총장	1			1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30			30			조교	11						<p>제2조(정원의 총수) -----</p> <p>-----</p> <p>-----</p> <p>1. ----- <u>1,541명</u></p> <p>2. (현행과 같음)</p> <p>3. ----- <u>43명</u></p> <p>4. (현행과 같음)</p> <p>[별표 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p> <p>1. 일반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구분</td> <td>4급 이상</td> <td>5급</td> <td>6급</td> <td>7급</td> <td>8급·9급</td> <td>전문경력관</td> </tr> <tr> <td>비율</td> <td>6% 이내</td> <td>18% 이내</td> <td>32% 이내</td> <td>33% 이내</td> <td><u>9.5% 이상</u></td> <td><u>1.5% 이내</u></td> </tr> </table> <p>2. ~ 4. (현행과 같음)</p> <p>[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직급별 \ 기관별</th> <th>총계</th> <th>본청</th> <th>의회</th> <th>직속기관</th> <th>사업소</th> <th>출장소</th> </tr> <tr> <td>총계</td> <td>3,206</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계</td> <td>1,423</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2급</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1</td> </tr> <tr> <td>2~3급</td> <td>1</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r> <tr> <td>3급</td> <td><u>10</u></td> <td><u>8</u></td> <td></td> <td>1</td> <td></td> <td>1</td> </tr> <tr> <td>3~4급</td> <td>2</td> <td>2</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67</td> <td>42</td> <td>7</td> <td>5</td> <td>7</td> <td>6</td> </tr> <tr> <td>5급이하 소계</td> <td>1,323</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전문경력관 소계</td> <td><u>19</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구직계</td> <td>150</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구관</td> <td>27</td> <td>1</td> <td></td> <td>24</td> <td>2</td> <td></td> </tr> <tr> <td>연구사</td> <td>123</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지도직계</td> <td>25</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지도관</td> <td>6</td> <td></td> <td></td> <td>6</td> <td></td> <td></td> </tr> <tr> <td>지도사</td> <td>19</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교육공무원계</td> <td>43</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총장</td> <td>1</td> <td></td> <td></td> <td>1</td> <td></td> <td></td> </tr> <tr> <td>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td> <td>30</td> <td></td> <td></td> <td>30</td> <td></td> <td></td> </tr> <tr> <td>조교</td> <td>1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율	6% 이내	18% 이내	32% 이내	33% 이내	<u>9.5% 이상</u>	<u>1.5% 이내</u>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총계	3,206						일반직계	1,423						1~2급	1					1	2~3급	1		1				3급	<u>10</u>	<u>8</u>		1		1	3~4급	2	2					4급	67	42	7	5	7	6	5급이하 소계	1,323						전문경력관 소계	<u>19</u>						연구직계	150						연구관	27	1		24	2		연구사	123						지도직계	25						지도관	6			6			지도사	19						교육공무원계	43						총장	1			1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30			30			조교	12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율	6% 이내	18% 이내	32% 이내	33% 이내	10% 이상	1% 이내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총계	3,206																																																																																																																																																																																																																																																																																																																				
일반직계	1,426																																																																																																																																																																																																																																																																																																																				
1~2급	1					1																																																																																																																																																																																																																																																																																																															
2~3급	1		1																																																																																																																																																																																																																																																																																																																		
3급	<u>11</u>	<u>9</u>		1		1																																																																																																																																																																																																																																																																																																															
3~4급	2	2																																																																																																																																																																																																																																																																																																																			
4급	67	42	7	5	7	6																																																																																																																																																																																																																																																																																																															
5급이하 소계	1,335																																																																																																																																																																																																																																																																																																																				
전문경력관 소계	<u>9</u>																																																																																																																																																																																																																																																																																																																				
연구직계	149																																																																																																																																																																																																																																																																																																																				
연구관	27	1		24	2																																																																																																																																																																																																																																																																																																																
연구사	122																																																																																																																																																																																																																																																																																																																				
지도직계	24																																																																																																																																																																																																																																																																																																																				
지도관	6			6																																																																																																																																																																																																																																																																																																																	
지도사	18																																																																																																																																																																																																																																																																																																																				
교육공무원계	42																																																																																																																																																																																																																																																																																																																				
총장	1			1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30			30																																																																																																																																																																																																																																																																																																																	
조교	11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율	6% 이내	18% 이내	32% 이내	33% 이내	<u>9.5% 이상</u>	<u>1.5% 이내</u>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총계	3,206																																																																																																																																																																																																																																																																																																																				
일반직계	1,423																																																																																																																																																																																																																																																																																																																				
1~2급	1					1																																																																																																																																																																																																																																																																																																															
2~3급	1		1																																																																																																																																																																																																																																																																																																																		
3급	<u>10</u>	<u>8</u>		1		1																																																																																																																																																																																																																																																																																																															
3~4급	2	2																																																																																																																																																																																																																																																																																																																			
4급	67	42	7	5	7	6																																																																																																																																																																																																																																																																																																															
5급이하 소계	1,323																																																																																																																																																																																																																																																																																																																				
전문경력관 소계	<u>19</u>																																																																																																																																																																																																																																																																																																																				
연구직계	150																																																																																																																																																																																																																																																																																																																				
연구관	27	1		24	2																																																																																																																																																																																																																																																																																																																
연구사	123																																																																																																																																																																																																																																																																																																																				
지도직계	25																																																																																																																																																																																																																																																																																																																				
지도관	6			6																																																																																																																																																																																																																																																																																																																	
지도사	19																																																																																																																																																																																																																																																																																																																				
교육공무원계	43																																																																																																																																																																																																																																																																																																																				
총장	1			1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30			30																																																																																																																																																																																																																																																																																																																	
조교	12																																																																																																																																																																																																																																																																																																																				

관계 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⑤ (생략)